

定 款



한올바이오파마 | 주

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 정관

제 정	1973. 11. 20	일부개정	1993. 03. 12
일부개정	1974. 04. 09	일부개정	1994. 03. 04
일부개정	1975. 03. 13	일부개정	1995. 03. 06
일부개정	1975. 05. 07	일부개정	1996. 03. 08
일부개정	1975. 12. 11	일부개정	1997. 03. 14
일부개정	1976. 09. 11	일부개정	1999. 03. 12
일부개정	1978. 10. 02	일부개정	2000. 03. 10
일부개정	1979. 01. 23	일부개정	2001. 03. 17
일부개정	1979. 02. 24	일부개정	2003. 03. 14
일부개정	1979. 02. 27	일부개정	2006. 03. 24
일부개정	1979. 03. 02	일부개정	2007. 03. 16
일부개정	1979. 03. 20	일부개정	2008. 03. 21
일부개정	1979. 05. 30	일부개정	2009. 03. 20
일부개정	1979. 09. 22	일부개정	2010. 03. 19
일부개정	1980. 07. 11	일부개정	2012. 03. 23
일부개정	1980. 08. 21	일부개정	2013. 03. 22
일부개정	1980. 09. 18	일부개정	2014. 03. 28
일부개정	1984. 10. 27	일부개정	2015. 03. 27
일부개정	1985. 01. 10	일부개정	2015. 07. 30
일부개정	1987. 06. 02	일부개정	2016. 03. 18
일부개정	1987. 10. 02	일부개정	2018. 03. 23
일부개정	1989. 09. 21	일부개정	2019. 03. 22
일부개정	1990. 03. 16	일부개정	2021. 03. 26
일부개정	1991. 03. 15	일부개정	2023. 03. 29

제 1 장 총 칙

제 1조 [상호]

당 회사는 한올바이오파마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ALL BIOPHARMA CO., LTD. 라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1. 의약품, 의약부외품, 수의약품, 화공약품, 농예약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2.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세제, 세정제, 비누, 도료의 제조 및 동 판매업
3. 식품, 식품첨가물, 인삼제품, 청량음료의 제조 및 동 판매업

4. 의약품 소분업
5. 의약품 도매업
6.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7. 수입품의 판매 및 위탁업
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9. 전산용역 및 임대업
10. 창고업 및 자동차 운수사업
11. 수산물 가공판매 및 수출입업
12. 기계전기 및 전자기기 매매업
13. 의약품 가공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임대업
14. 교육 서비스업
15. 금형 및 기타 장치 제조 및 판매업
16. 섬유제품 판매업
17. 정보통신사업 및 관련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18.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및 가공업
19. 방송관련 사업 및 그 부대업
20.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21. 출판업 및 동 판매업
22. 과학기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 용역업
23. 전 각호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제 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1. 당 회사는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다.
2.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조 [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all.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9,000만주로 한다.

제 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조 [주식의 종류]

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7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 당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범위 내로 한다.
2.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조의 3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1. 당 회사는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4.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5. 당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에 의한다.

제 7조의 4 [전환주식]

1. 당 회사는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 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에 의한다.

제 7조의 5 [상환주식]

1. 당 회사는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상환청구할 수 있다.
 -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이 경우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②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③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으로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④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4. 상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7조의 6 [의결권 배제 주식]

1. 당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같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9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1. 당 회사는 임·직원에게(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당해 법인의 이사는 제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주식의 종류)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주식의 권면액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여시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②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③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 9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조의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제7조(주식의 종류)의 주식 중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조 [시가발행]

1. 당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발행가액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 당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당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당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2.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5일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3. 당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 14조 [사채의 발행]

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조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조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익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조의 4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조의 5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5조 [소집시기]

1.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6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8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19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21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2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당 회사의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3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조의 2 [특별다수결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특별결의 사항 중 타 법인이 본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① 본 회사의 적대적 인수를 목적으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 ② 본 회사의 적대적 인수를 목적으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26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 27조 [이사의 수]

1.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8조 [이사의 선임 및 자격]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당 회사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 29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0조 [이사의 보선]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1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2.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1인의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 32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조 [이사·감사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1.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 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 의장은 제35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 3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7조의 2 [위원회]

1. 당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감사위원회
 - ② 보상위원회
 -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④ 기타 각종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9조 [상담역 및 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9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1. 당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6.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8.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9.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9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1. 감사위원회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8.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9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 40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불구하고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①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②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5.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잉여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2조의 2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3조의 2 [분기배당]

1. 당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 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④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⑤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⑥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⑦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3조의 3 [주식의 소각]

1. 당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 ①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②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 ③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 44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조 [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2조 [세칙제정]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의 결의로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이 정관은 제4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제4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